

# 2018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사전에 공고문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7.12.29(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격 검증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 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존주택 즉시지원 제도 안내]

기존주택 1순위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는 금회 모집공고와 관계 없이 연중 신청 가능하오니, 본인이 필요하신 시기에 신청하시면 간편한 절차로 입주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 구 분        |               | 안 내 사 항                            |
|------------|---------------|------------------------------------|
| 동의서 수집 사유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 전세임대주택이란?

저소득계층등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 1. 공급호수 · 대상주택 · 사업지역 · 지원한도액

| 구분    | 내 용                                                                                                                                                                                                                                                                                                                                                                                              |
|-------|--------------------------------------------------------------------------------------------------------------------------------------------------------------------------------------------------------------------------------------------------------------------------------------------------------------------------------------------------------------------------------------------------|
| 공급호수  | <b>20,170호</b><br>(고령층용 전세임대 3,000호 포함)                                                                                                                                                                                                                                                                                                                                                          |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br>-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로 제한하며, 다자녀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br><br>※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u>오피스텔</u> <sup>*)</sup> 지원 가능<br>*)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br><br>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
| 사업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강릉, 동해, 속초, 원주, 춘천, 음성, 청주, 충주, 제천, 아산, 예산, 천안, 공주, 논산, 당진, 서산, 보령, 홍성, 김제, 군산, 남원, 익산, 완주, 전주, 정읍, 목포, 순천, 여수, 광양, 무안, 나주, 경산, 경주, 구미, 포항, 김천, 상주, 안동, 영주, 영천, 칠곡, 거제, 김해, 양산, 진주, 창원, 밀양, 사천, 통영, (제주, 서귀포)<br>※ 제주지역은 지역 특성에 따라 별도 공급                                                                                                                       |
| 지원한도액 |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기타지역 5,500만원<br>※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 2.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br>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
| 금리(연이율) | <b>1.0%</b> | <b>1.5%</b>         | <b>2.0%</b> |

-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함

## 2) 임대조건 산정(예시)

전세보증금 8,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 (임대보증금) 4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8,000만원 - 400만원) × 2.0% ÷ 12] = **126,660원**

전세보증금 5,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325만원(기본 250만원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5,000만원 - 325만원) × 1.5% ÷ 12] = **58,430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550만원(기본 250만원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5,000만원 - 550만원) × 1.5% ÷ 12] = **55,620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 3. 신청자격 및 순위(2순위 접수)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7.12.29)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고령자용 전세임대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경우( 1952.12.29이전 출생자)

## ■ 신청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 신청자 | 자격 검증 대상                                                                                     |
|-----|----------------------------------------------------------------------------------------------|
| 세대주 | • 신청자                                                                                        |
| 신청시 |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 세대원 | • 신청자 및 세대주                                                                                  |
| 신청시 |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br>•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됨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 50% 이하인 자<br>* 다만, 영구임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총자산 167백만원, 자동차 2,522만원)                                                        |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br>* 다만, 영구임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총자산 167백만원, 자동차 2,522만원)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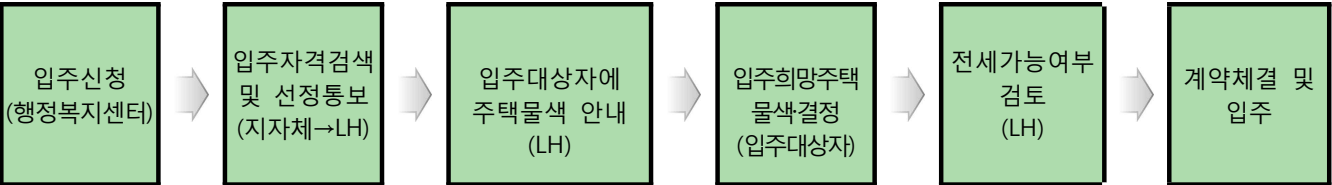
| 구분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소득 50% 이하  | 2,442,220 | 2,815,130 | 2,815,130 | 2,976,330 | 3,154,370 | 3,332,400 |
| 소득 100% 이하 | 4,884,448 | 5,630,275 | 5,630,275 | 5,952,668 | 6,308,741 | 6,664,814 |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18.1.17(수) ~ 1.23(화)  
- 단, 토·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12.29)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5. 입주절차



○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7.12.29기준)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3호를 따름)으로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p>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br/>(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p> <p>*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p> <p>*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p> | <p>가. 24개월 이상<br/>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br/>다. 12개월 미만</p>            | <p>3점<br/>2점<br/>1점</p> |
| <p>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b>신청인</b>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p>                                                                                                                                                                                                                                                                                                                     | <p>가. 5년 이상<br/>나. 3년 이상 5년 미만<br/>다. 3년 미만</p>                    | <p>3점<br/>2점<br/>1점</p> |
| <p>③ 부양가족* 수<br/>(세대주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p>                                                                                                                                                                                                                                                                                                                                                                | <p>가. 3인 이상<br/>나. 2인<br/>다. 1인</p>                                | <p>3점<br/>2점<br/>1점</p> |
| <p>* 별도 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li> <li>-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br/>(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로서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li> <li>-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li> </ul>                                                                                                                                                                                            |                                                                    | <p>1점<br/>1점<br/>1점</p> |
| <p>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br/>※ <b>신청인</b> 명의의 통장만 인정</p>                                                                                                                                                                                                                                                                                                                                    | <p>가. 24회 이상 납입<br/>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br/>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p> | <p>3점<br/>2점<br/>1점</p> |
| <p>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p>                                                                                                                                                                                                                                                                                                                     | <p>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br/>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br/>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p>   | <p>2점<br/>1점</p>        |

\*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 나이로 산정함

## 6. 제출서류

| 서류명                       | 설 명                                                                                                                                                                                                                                                                                                                                                                                          |
|---------------------------|----------------------------------------------------------------------------------------------------------------------------------------------------------------------------------------------------------------------------------------------------------------------------------------------------------------------------------------------------------------------------------------------|
| ① 주민등록등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li> <li>※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br/>(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추가 제출)</li> </ul>                                                                                                                                                      |
| ② 신분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li> <li>·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li> </ul>                                                                                                                                                                                                                                                                     |
| ③ 가점 부여 관련 서류<br>(해당시 제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br/> <b>※ 발급기준일 : 2017.12.29 (발급관리번호 : 2017980098)</b><br/> <b>※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a href="http://www.ap2you.com">http://www.ap2you.com</a>)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b> </li> <li>·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li> <li>·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li> <li>·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li> </ul> |
|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 의 서명, 날인</li> </ul>                                                                                                                                                                                                                                                                                                                   |
| 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 양식으로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 의 서명, 날인</li> </ul>                                                                                                                                                                                                                                                                                                           |
| ⑥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li> </ul>                                                                                                                                                                                                                                                                      |

## 7. 입주자격 확인

■ 입주대상자는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LH로 통보

- \*1)자격확인 : 무주택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확인, 장애인 가구 해당여부  
 2)소득 조회 항목

| 소득유형 | 세부항목                                |
|------|-------------------------------------|
| 근로소득 | ①상시근로소득, ②일용근로소득, ③자활근로소득, ④공공일자리소득 |
| 사업소득 | ⑤농업소득, ⑥임업소득, ⑦어업소득, ⑧기타사업소득        |
| 재산소득 | ⑨임대소득, ⑩이자소득, ⑪연금소득                 |
| 기타소득 | ⑫공적이전소득                             |

## 8. 입주대상자 발표

### ■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접수일로 부터 약 2개월 후

### ■ 장소 : LH 전월세지원센터(<http://jeonse.lh.or.kr>)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시·군·자치구의 입주대상자 선정 통보시기가 상이하여 LH 지역본부별로 LH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 9 기타사항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단, 세대원 중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은 예외)
- 1인 가구 및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임대주택 거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전세임대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지역별 신청접수현황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계약기한은 지역별로 별도 안내예정)
- 전세임대 지원은 최초 지원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도(道)내 사업대상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재계약시에는 최초 계약시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지역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세대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 체납, 불법·전매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자와 LH간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시 LH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금 등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부채비율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시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 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부득이하게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하되, **지역관행을 고려**하여 임차인 시행지역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여 해당 시·군·구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우선공급(공급량의 2%)을 통보한 자는 입주신청기간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입주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우선공급물량은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며, 불임 전세임대 관련 주요 문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생활가정 전세임대 공급

장애인 등 특수취약계층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은 시·도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운영기관 지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공급

- 공급목적 : 사회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전세임대주택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 공급대상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공급호수 : 1,000호
- 지원한도 :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지역 5,000만원
- 임대조건 :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 (만 20세 이후에는 연 2% 이자 부담, 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 지원기간 종료후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로 계속 지원 가능
- 신청장소 : 시·군·구청 (교통사고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추천)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 고령층용 전세임대 공급

- 공급목적 : 독거노인 등 저소득 고령층에 대상 전세임대주택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 공급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급호수 : 3,000호
- 지원한도 및 임대조건 :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동일함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기간에 신청('18.1.17~1.23) 단, 토요일 제외

## 10. 문의처(월~금요일, 09:00~18:00)

| 구분     | 연락처                                                         |
|--------|-------------------------------------------------------------|
| LH 콜센터 | 1600-1004( <a href="http://www.lh.or.kr">www.lh.or.kr</a> ) |

함께 만들어요. clean



| 지역본부     | 관할 지역                                                            | 주소                              | 연락처                                                           |
|----------|------------------------------------------------------------------|---------------------------------|---------------------------------------------------------------|
| 서울지역본부   | 서울<br>경기북부(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 <b>1670-2591</b><br>*문자상담 : <b>1670-2591</b><br>단, 45자 이내로 제한 |
| 경기지역본부   | 경기남부(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 번길 3        | <b>1670-2592</b>                                              |
| 인천지역본부   | 인천<br>경기서부(고양, 김포, 광명, 부천, 시흥, 파주)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 <b>1670-2593</b>                                              |
| 부산울산지역본부 | 부산, 울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2               | <b>051)460-5523~5528</b>                                      |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 경북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 <b>053)603-2800</b>                                           |
|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 전남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 <b>062)360-3265,3321,3324</b>                                 |
|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 세종, 충남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 <b>042)470-0700</b>                                           |
| 강원지역본부   | 강원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 <b>033)258-4166,4131,4127</b>                                 |
| 충북지역본부   | 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239, 청주타워 7층 | <b>043)220-8890,8891</b>                                      |
| 전북지역본부   | 전북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 <b>063)230-6362</b>                                           |
| 경남지역본부   | 경남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 <b>1800-0553</b>                                              |
| 제주지역본부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 <b>064)720-1034, 1036</b>                                     |

# 1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1순위)건강보험공단<br>(2순위)국민연금공단<br>(3순위)장애인고용공단<br>(4순위)국세청<br>※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b>1가지</b> 만 조회됨 |
|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br>·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br>·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물식품부                                                                                           |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 자산항목 산정방법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임 [소득 및 자산액은 가구원의 합계액을 말함]

| 구분  |       | 산정방법                                                                                                                                                                                                                                                                                                                                                                                                                                                                                                                                                                                                                                                                                                                                                                                                                                       |
|-----|-------|--------------------------------------------------------------------------------------------------------------------------------------------------------------------------------------------------------------------------------------------------------------------------------------------------------------------------------------------------------------------------------------------------------------------------------------------------------------------------------------------------------------------------------------------------------------------------------------------------------------------------------------------------------------------------------------------------------------------------------------------------------------------------------------------------------------------------------------------|
| 총자산 | 부동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li></ul></li><li>•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ul></li><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li></ul></li></ul>                       |
|     | 자동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b>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b></li><li>• <b>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고</b>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ul></li><li>• 산출한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해당기준을 충족하더라도 <b>별도의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b> 이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b>비영업용 승용자동차</b>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b>높은 차량가액</b>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ul></li><li>•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li></ul> |
|     | 금융 자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li><li>•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li><li>•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li><li>•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li><li>•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li><li>•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li>•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li></ul>                                                                                                                                                                                                                                                                                                                                                                                           |

| 구분  |       | 산정방법                                                                                                                                                                                                                                                                                                                                                                                                                                                                                                                                                                                                                                                                                                         |
|-----|-------|--------------------------------------------------------------------------------------------------------------------------------------------------------------------------------------------------------------------------------------------------------------------------------------------------------------------------------------------------------------------------------------------------------------------------------------------------------------------------------------------------------------------------------------------------------------------------------------------------------------------------------------------------------------------------------------------------------------|
| 총자산 | 일반 자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li> <li>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li> <li>「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br/>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br/>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li> <li>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li> </ul> |
|     | 부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li> <li>공공기관 대출금</li> <li>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li> <li>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li> <li>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li> </ul>                                                                                                                                                                                                                                                                                                                                                                                                                                                                                  |

###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구 분        |              | 안 내 사 항                            |
|------------|--------------|------------------------------------|
| 동의서 수집 사유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 자산검색 대상 가구원 전원 서명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가구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모두에 가구원 전원 서명이 반드시 필요

## 12.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
|    | -      |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구분 | 제공의                                 | 개인정보 내역                                                                                                                                   |
|----|-------------------------------------|-------------------------------------------------------------------------------------------------------------------------------------------|
| 기본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br>-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br>-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br>- 가족관계사항<br>- 입주자저축 가입내역<br>-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
| 소득 | <input type="checkbox"/>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br>- 공적연금 가입내역<br>- 건강보험 가입내역<br>-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br>-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br>- 사업자등록사항 |
| 자산 | <input type="checkbox"/>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
| 기타 | <input type="checkbox"/>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br>-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

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
|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소유여부 검색<br>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 사회보장정보원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
|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 거주자 실태조사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
|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 입주자 만족도 조사                          | 성명, 연락처, 주소                         |
| 카드사결제대행사                | 임대료 결제(카드)<br>임대료 수납관리              | 주소, 계약자번호                           |
| 금융결제원                   |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
| <b>우정사업본부</b>           | <b>계약체결 안내문, 소명안 내문 등의 e그린우편 발송</b> | <b>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입주자격 검증결과</b> |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절차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경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같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br>(외국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신청자 |     |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  |  |  |  |  |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 신청자와의<br>관 계 | 동의자<br>성 명 | 주민등록번호<br>(외국인등록번호)                                                                                                                                                                | 금융정보 등의<br>제공을 동의함 <sup>1)</sup><br>(서명 또는 인) | 금융정보 등의 제공<br>사실을 동의자에게<br>통보하지 아니함 <sup>2)</sup><br>(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    |  |      |  |
|-----|----|--|------|--|
|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
|     | 주소 |  |      |  |

###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 구분    |          | 해당 여부                        | 소재지 또는 내역 | 금액 | 명의인       | 신청자와의 관계 |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예 <input type="checkbox"/>   |           | 원  | [임차인]     |          |
|       |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 원  | [임차인]     |          |
|       | 분양권      | 예 <input type="checkbox"/>   |           | 원  | [수분양자]    |          |
|       |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 원  | [수분양자]    |          |
|       | 비상장주식    | 예 <input type="checkbox"/>   |           | 원  | [주주(보유자)] |          |
|       |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 원  | [주주(보유자)] |          |
|       | 출자금/출자지분 | 예 <input type="checkbox"/>   |           | 원  | [출자자]     |          |
|       |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 원  | [출자자]     |          |
| 부채    | 임대보증금    | 예 <input type="checkbox"/>   |           | 원  | [임대인]     |          |
|       |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 원  | [임대인]     |          |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라.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마.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신청인 : (인)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00지역본부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해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